

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(정기분)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 제9조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(정기분)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불명·이사감·반송함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4월 16일

김 제 시 장



- 제 목 :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(정기분)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- 근거법규
 - 「환경개선비용부담법」 제9조
 - 「국세기본법」 제11조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
 -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
- 공고기간 : 2024. 4. 16. ~ 2024. 4. 30.(15일간)
- 공고대상자 및 내역 : 불임참조
-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: 김제시 환경과 ☎(063)540-3563
-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